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5174

발의연월일: 2022. 4. 8.

발 의 자:김정재·한무경·양금희

이철규 • 정우택 • 박대수

金炳旭・권명호・송언석

김석기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최근 철광석·원유·펄프 등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 지속되어서, 원자재를 가공하여 제조한 물품 등을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수준임.

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만,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현실적인 관계 등으로인하여 이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소수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부담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떠안을 수밖에 없음.

이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작성해야 하는 약정서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에 관한 내 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을 완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에 주요 원자재의 종류 및 가격을 기재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21조제1항).
- 나. 주요 원자재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하였을 경우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함(안 제22조제7항 신설).
- 다. 약정서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품대금 조정분의 2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(안 제43조제5항 신설등).

법률 제 호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 중 "그 위탁의 내용, 납품대금의 금액, 대금의 지급 방법, 지급기일, 검사 방법, 그 밖에 필요한"을 "다음 각 호의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위탁의 내용
- 2. 납품대금의 금액, 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
- 3. 물품등의 검사 방법
- 4.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의 종류 및 가격
- 5. 제4호의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방법
- 6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주요 원자재의 종류, 원자재의 가격, 가격 변동에 대한 확인 및 납품대금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계약기간 중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에 기재된 주요 원자

재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하였을 경우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기재된 납품대금의 조정 방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
제4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한다.

⑤ 제22조제7항을 위반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품대금 조정분의 2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약정서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약정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약정서의 발급) ① 위탁기	제21조(약정서의 발급) ①
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	
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	
그 위탁의 내용, 납품대금의 금	다음 각 호의
액, 대금의 지급 방법, 지급기	
일, 검사 방법, 그 밖에 필요한	
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	
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.	
<u><신 설></u>	1. 위탁의 내용
<u><신 설></u>	2. 납품대금의 금액, 지급 방법
	및 지급기일
<u><신 설></u>	3. 물품등의 검사 방법
<u><신 설></u>	4.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
	주요 원자재의 종류 및 가격
<u><신 설></u>	5. 제4호의 주요 원자재 가격
	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
	<u>정 방법</u>
<u><신 설></u>	<u>6</u> 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
	른 주요 원자재의 종류, 원자재
	의 가격, 가격 변동에 대한 확
	인 및 납품대금의 조정 등에
	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
제22조(납품대금의 지급 등) ① 제22조(납품대금의 지급 등) ① ~ ⑥ (생 략) <신 설>

제43조(과태료) ① ~ ④ (생 략)

<신 설>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 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정한다.

- ~ ⑥ (현행과 같음)
 - ⑦ 계약기간 중에 제21조제1항 에 따른 약정서에 기재된 주요 원자재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하였을 경우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기 재된 납품대금의 조정 방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.
- 제43조(과태료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 - ⑤ 제22조제7항을 위반하여 납 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품대금 조 정분의 2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u>6</u>	 <u>제5항</u> -	